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513 발의연월일: 2025. 4. 1.

발 의 자:신영대·허성무·홍기원

전재수 · 이해민 · 김정호

윤준병·한민수·강준현

임광현 · 김기표 · 김용만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르면 경찰공무원, 여성농어업인 및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자영업자의 경우 장기간 근로를 비롯해 블랙컨슈머, 매출하락과 감정노동 등 여러 스트레스 요인과 자영업의 특성이 자영업자의건강을 악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있음에도 건강 증진에 관한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실제로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임금 근로자보다 자영업자의 평균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자영업자 중에서도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건강상태가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음.이에 소상공인 특수건강진단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자영업자와 영세소상공인의 건강 증진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제12조

의8 신설).

법률 제 호

령으로 정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8(소상공인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 1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를 하는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은 같은 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에 준하는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다. ② 건강진단의 시기, 항목,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2조의8(소상공인에 대한 특수
	건강진단 지원) ① 「산업안전
	보건법」 제1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를
	하는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은 같은
	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에 준
	하는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다.
	② 건강진단의 시기, 항목, 방
	법 등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
	기업부령으로 정한다.